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2014. 3. 17(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3. 5 .

나. 제안자 : 김 병 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3. 5 .

라. 상정일자 : 2014. 3. 17.(제214회 임시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 병 철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
- 질의 및 토론
- 월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배기량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안 별표 1)
 - 배기량 2,000cc이상 다목적형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자동차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반해 “다목적형” 차량에 대하여만 100분의 4로 인하 할 경우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 등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단순한 채권요율의 인하를 통한 세수증대는 시·도간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 인하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 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도시철도채권 매입의 요율 인하 보다는 우리시로 자동차 등록 내지 이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시도간의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데...타 시도는 요율이 어떠한지? (정수영 의원) 타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질의
⇒ 타 시도 요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그동안 리스차량 등록률 1위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왔으나 대구와 부산에서 요율을 낮춰 차량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매입요율을 인하할 경우 16억 세수 증대가 예상됨.(건설교통국장)
- 본 조례안의 취지는 동감하나, 근본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수영 의원)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이도형, 김병철, 정수영 의원
-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3, 찬성 : 3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p>1. 자동차 신규등록</p> <p>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p> <p>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다목적형 포함)</p> <p> ① 배기량 1,000cc 이상 1,500cc 미만</p> <p> ②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p> <p> ③ 배기량 2,000cc 이상</p> <p>2)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p> <p>3)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p> <p>4)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p> <p>5) 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p> <p>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p> <p>1) 대형화물자동차(4.6톤 이상인 자동차)</p> <p>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p> <p>3)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p> <p>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p>	<p>면제</p> <p>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p> <p>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다만,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p> <p>대당 390,000원</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390,000원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650,000원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650,000원 초과할 경우 65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390,000원 초과할 경우 390,000원 적용)</p> <p>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95,000원 초과할 경우 195,000원 적용)</p> <p>면제</p>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다목적형 포함)

- ① 배기량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②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
- ③ 배기량 2,000cc 이상

면제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4)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15,000원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5) 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435,000원 초과할 경우 435,000원 적용)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면제

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1) 대형화물자동차(4.6톤 이상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15,000원 초과할 경우 215,000원 적용)

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30,000원 초과할 경우 130,000원 적용)

3)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65,000원 초과할 경우 65,000원 적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면제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면제